

# 서약서

학 번 :

학 년 :

성 명 :

본인은 학기 개시후 휴학원을 제출함에 따라 복학 시에 등록금의 (1/6, 1/3, 1/2, 전액)을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서약인 성명 : (인)

##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장 귀하

###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(약칭: 대학등록금규칙)

[시행 2022. 2. 7.] [교육부령 제257호, 2022. 2. 7., 일부개정]

교육부(청년장학지원과), 044-203-6268

제6조(등록금의 반환)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. <개정 2010. 12. 2.>
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"반환사유"라 한다)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. <개정 2010. 12. 2., 2021. 2. 2.>

1. 법령에 따라 입학(재입학 및 편입학)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2.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3.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3의2.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(除籍)된 경우
4.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
5.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2. 2.>

[제목개정 2010. 12. 2.]

### -등록금의 반환기준-

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학기 개시일일터 30일까지	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	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	반환하지 아니함